

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간호사과정의 종류) 전문간호사과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1., 2023. 3. 1., 2025. 9. 1.)

1. 노인전문간호사과정
2. 호스피스전문간호사과정
3. 종양전문간호사과정
4.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
5. 가정전문간호사과정

제3조(지원자격) 국내외 간호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아래 각 호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1. 3. 1., 2023. 3. 1., 2025. 9. 1., 2025. 9. 1.)

1. 노인전문간호사과정

가. 의료기관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마.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2. 호스피스전문간호사과정

가.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나. 종합병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3. 종양전문간호사과정

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외에는 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4.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

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가정전문간호사과정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4조(모집정원) 모집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1., 2023. 3. 1., 2025. 9. 1.)

1. 노인전문간호사과정: 10명
2. 호스피스전문간호사과정: 5명
3. 종양전문간호사과정: 7명
4.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 10명
5. 가정전문간호사과정: 10명

제5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과정은 기초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운영한다.

- ② 강좌개설을 위해 학과장은 학기 시작일 1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강좌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과 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1학기 이상의 연구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⑤ 그 밖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운영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5. 8. 4.)

제6조(학점 이수) ① 학점 신청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문간호사과정을 위해 개설된 과목 중에서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수여) 학위수여는 연 1회로 한다.

제8조(일반 석사과정 변경) 전문간호사과정생이 17학점 이수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해 일반과정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심의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대학원 장학금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 「규정류 관리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규정류’로 제정되었음

<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

1.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운영된 전문간호사과정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